

## 통보

다음 고지는 10.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p>1. <b>통보국가:</b> <u>덴마크</u> <b>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b></p>
<p>2. <b>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b> 덴마크 에너지청, 코펜하겐 Carsten Niebuhrs Gade 43 DK-1577 København V Denmark 전화: +45 30 92 67 00 이메일: <a href="mailto:bioenergi@ens.dk">bioenergi@ens.dk</a>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가능한 경우,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를 표시해야 한다. 덴마크 기업청 Langelinie Allé 17 DK-2100 Copenhagen O Denmark 전화: +45 35 29 10 00 이메일: <a href="mailto:notifikationer@erst.dk">notifikationer@erst.dk</a></p>
<p>3. <b>조항 2.9.2 [X], 2.10.1 [ ], 5.6.2 [ ], 5.7.1 [ ], 3.2 [ ], 7.2 [ ], 기타에 근거해 통보:</b></p>
<p>4. <b>해당제품(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b> 곡물의 짚과 껌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HS code(s): 1213),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침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텁밥 ·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 · 브리케트(briquette)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code(s): 4401), 목모, 목분. (HS code(s): 4405)</p>
<p>5. <b>제목(페이지수, 언어):</b> Bekendtgørelse om bæredygtighed og besparelse af drivhusgasemissioner for biomassebrændsler og flydende biobrændsler til energiformål, m.v. (41페이지, 덴마크어) Bekendtgørelse om Håndbog om opfyldelse af bæredygtighedskrav og krav til besparelse af drivhusgasemissioner for biomassebrændsler og flydende biobrændsler til energiformål (HB 2021) (123페이지, 덴마크어), (41페이지, 덴마크어), (123페이지, 덴마크어)</p>
<p>6. <b>내용:</b> 이 규칙안은 전기, 난방 또는 냉방 시설에 사용되는 목재로 생산된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가정 내 개별 난방에 사용되는 목재 펠릿, 목재 브리켓, 장작의 수입업체와 생산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도 규정한다.</p>

다음은 2023년 10월 18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23/2413(이하 REDIII라 칭함)으로 개정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2001에 따른 지속가능성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관한 조항의 과도한 이행 또는 국가 재량권으로 인한 법률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제안된 법률 변경 사항은 더 많은 식물과, 따라서 더 많은 바이오매스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 난방 또는 냉방 시설의 총 열 투입량이 1MW 이하인 목재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2028년 1월 1일부터 지속가능성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덴마크 법률에 적용되는 한도는 2.5MW이다. 이 요건은 고체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총 열 투입량이 7.5MW 이상인 발전소에 REDIII에 따른 요건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소규모 발전소에도 적용된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총 5,000톤 이상의 목재 펠릿, 목재 브리켓, 장작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가정 내 개별 난방용 목재 펠릿, 목재 브리켓 또는 장작 수입업체 및 생산업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연간 5,000톤 이상의 목재 펠릿, 5,000톤의 목재 브리켓 또는 5,000톤의 장작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덴마크의 수입업체 및 생산업체 규정보다 강화된 제한 사항이다.

또한, 이 규칙안은 REDIII에 따라 목재 바이오매스의 연속적인 사용(cascading use)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도입한다. 기업에서는 해당 공급망에서 시장 왜곡과 생물다양성, 기후 피해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REDIII에 따른 농업 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대한 더욱 엄격한 요구 사항이 간소화된 버전으로 구현된다. 간소화에 따라 설치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설치는 80%의 설치율을 달성해야 한다. 절감. 단, 2030년까지 다른 시점에 적용.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 이 규정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에 덴마크의 목재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건이 평가되었다. 핵심 요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목재 연료 소비가 잔여물, 특히 임업 잔여물을 포함한 목재의 일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덴마크가 기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잔여물로 구성된 목재 바이오매스 연료만 소비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 요건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존 덴마크 법률의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관련 기후 및 생물다양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목재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요건에 관한 이 규칙안은 덴마크에서 목재 바이오매스가 지속 불가능한 경로로 에너지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더욱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규정은 덴마크에서 에너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목재 바이오매스가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확립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 규정안은 덴마크의 목재 바이오매스가 산림의 탄소 저장량과 흡수원이 유지되는 곳에서 생산되고 동시에 생산 체인의 배출량이 제한되도록 보장하는 데 계속하여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 사항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노력과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을 기여할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덴마크 규정은 탄소 저장량이 감소하고 산림 인증을 받지 못한 지역/국가에서의 산림 바이오매스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칙안은 이전보다 더욱 확실하게 자연 보호 지역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며, 특히 산림을 벌채하거나 고사목을 제거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지역과 특수 종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바이오매스가 매우 먼 거리로 운송되거나 목재 펠릿 가공 등에 많은 양의 화석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환경 보호

#### 8. 관련 문서: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법 공포](#)(Bekendtgørelse af lov om fremme af vedvarende energi)

#### 9. 채택 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 2025-05-21

#### 10. 의견 마감일: 통보일로부터 60일

11.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 국가 질의처[ ] 또는 주소, 전화와 팩스 번호,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 해당할 경우, 다른 기관:

덴마크 표준국  
Göteborg Plads 1  
Nordhavn  
DK-2150  
전화: + (45) 39 96 61 40  
팩스: + (45) 39 96 61 01  
이메일: [wto@ds.dk](mailto:wto@ds.dk)  
웹사이트: <http://www.ds.dk>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DNK/25\\_01244\\_00\\_x.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DNK/25_01244_00_x.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DNK/25\\_01244\\_01\\_x.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DNK/25_01244_01_x.pdf)